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 위 함	다소 높은 위험	통 함 위	낮 위 함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작성기준일2024년 10월 31일5.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2024년 11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

(판매기간) 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rightarrow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에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 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한 국투자 글로벌자산배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10.31)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편드코드: CU169)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바다	소 유 유 유	보통	는 맞 위	마 아 아 아 아 아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 조절에 따른 자산배분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mark>동 집합투자</mark> 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u>장기적으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u> <u>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u>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u>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u>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 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합니다.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은퇴시기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신탁재산내에서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자산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50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설정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투자기간 동안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목표시점(Target Date) 이후부터는 40%이하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	4		자가 부딤 통보수 및	하는 비용 (%)		1,000만원 투사시 투사사가 무남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투자비용	종류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 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선취- 오프라인 (A)	납입금 액의 1.0% 이내	0.9610	0.6400	0.9100	1.3962	242	387	537	855	1,753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인 (C)	(위 (전	1.3010	0.9800	1.2200	1.7377	178	362	552	950	2,063
수수료 선취- 온라인 (A-e)	납입금 액의 0.5% 이내	0.6410	0.3200	0.6100	1.0766	160	273	391	641	1,356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C-e)	없음	0.8110	0.4900	0.8000	1.2457	128	260	397	688	1,513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 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mark>종류A와 종류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mark>이며, <mark>종류A-e와 종류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mark>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5) 합성 총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합성 총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43%]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선취(A)
투자실적 추이	비교지수
구이 (연평균 수익률)	수익률 변동성
구식절기	/ㅈィ\ 비그피

_					[[단위 : %]	
		최근 1 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종류	최초설정일	2023.11.01~	2022.11.01~	2021.11.01~	2019.11.01~	설정일 이후	
		2024.10.31	2024.10.31	2024.10.31	2024.10.31	UP	
수수료 선취(A)		27.48	13.73	6.98	_	11.01	
비교지수	≥	_	_	_	_	_	
수익률 변동성	2020.09.05	8.62	9.41	11.53	13.15	13.04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 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0010		생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간접형)</mark>			용	
운용전문 인력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운용 규모	운용	용 역	운용	용사	경력 년수
				수(개)	ㅠ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eT

미사그 1000 채이 10 15 0/2 10 76 11 02 20 /7 11 37	37 4년 9개월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 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 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모투자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24.07.31 기준]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성명	생년 (년)	직위	집합투	운용	운용	용 역	운용	용사	운용 경력
			자기구 수	기구 규모	최근1 년	최근2 년	최근1 년	최근2 년	년수
Wyatt Lee	1971	Head of Target Date Strategies	141	4,784.70 억 달러	Í	_	I	_	
Kim DeDomin icis	1976	Portfolio Manager	203	5,031.14 억 달러	Í	_	I	_	
Andrew Jacobs van Merlen	1978	Portfolio Manager	141	5,101.26 억 달러	1	_	I	_	_
Thomas Poullaou ec	1976	Head of MA Solutions, APAC & Portfolio Manager	4	4.5천만 달러	-	_	-	-	_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사항 중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 수 등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 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 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 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 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 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 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3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 및 기준가격의 급변이 발수 있습니다.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 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유형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생하여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 투자증권 등은 다양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 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전략 에 따라 미달러(USD)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글로벌 통화에 노출될 수 있으므 로, 특정 통화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환매 수수료	자금을 납입: (D+2)에 공고 매입 •오후 5시 경 우: 자금을	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방법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내를 보내 방법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9)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1영업일(D+10)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판매회사 본·영업점.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분 집합투자기=	과세의 주요내용 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과세	<u> </u>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					
		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					

			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				
	연금저축 가입자에 과세	계좌 투자 대한 저축 시외	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			
	퇴직연금 의 세기	세노 연글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투 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압	었음					
집합투자 업자	※ 해외위트	: 02-2055- 탁집합투자(· · · · · · · · · · · · · · · · · · ·			
모집기간	효력발생 0	기후 계속 5	지 가능 모집·매출 1 총액 1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4년 11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참조	•	**	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관한 사항(7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판매경로- <u>다음과 같</u> 습	-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 집합투자기				
		수수료 선취(A) 전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도 보래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 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수수료 후취	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 니다.	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			
집합투자 기구의			수수료 미징구 (C)	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칙 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			
종류		온라인 (e)	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 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 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판매	오프 라인	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 가 제공됩니다.	H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 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경로	직판	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는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온라인 슈퍼(S)	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 객관적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 수익증권(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바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 ,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
	(F)	다.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
	(G)	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디폴트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
기타	션(O)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연금(P)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연금(R)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
	(W)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CU1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CU17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CU17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CU1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CU1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CU1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CU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CU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CU1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CU1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CU1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CU1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기관 (C-RF)	CU1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판-랩 (C-W)	CU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 (O)	DX1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CU1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CU1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R)	D067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 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9년 8월 12일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
	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ㆍ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모집방법	파메하지 여러이에 파메하지 차그를 투하여 무지하니다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CU1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CU17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CU17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CU1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CU1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CU1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CU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CU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CU1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CU1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CU1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CU1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기관 (C-RF)	CU1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판-랩 (C-W)	CU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 (O)	DX1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CU1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CU1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R)	D067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19년 09월 05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0년 08월 03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아이타스 → 국민은행)				
2022년 08월 25일	5일 종류 수익증권 신설(종류C-RO)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인하				
2022년 09월 02일	종류 수익증권 명칭 변경(종류C-RO 수익증권 → 종류O 수익증권)				
2022년 10월 27일	판매회사보수율 인하(종류O)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19년 09월 05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0년 08월 03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아이타스 → 국민은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대표전화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및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 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및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1 -1 -1							
회 사 명	T. Rowe Price International Ltd.						
조사 미 여러된	60 Queen Victoria Street, London, EC4N 4TZ, U.K.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44 20 7651 8200)						
	- 1937년 T. Rowe Price 설립(지주회사)						
회사연혁	- 2000년 T. Rowe Price International 설립						
	- 2002년 Target Date Fund 운용 개시						
회사소개	1937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T. Rowe Price						
회사고개	Group, Inc"의 자회사						
업무위탁의 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및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및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를 상기의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해외위

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4.10.31 기준]									
	LIUA	생년 되어	운용현황		연평균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간접형)</mark>			007474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운용 규모	운동	운용역 운용사		운용경력 년수	
			수(개)	ㅠ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민상구	1988	책임	19	15.042	19.76	11.02	20.47	11.37	4년 9개월

<이력>

- Fudan University International Finance
- 2015.07 ~ 2017.05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 2017.05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주식운용본부, 글로벌운용부문,

글로벌운용본부, GIS운용본부, 솔루션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			운용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간접형)</mark>			운용경력		
성명	성명 생년 직위	직위	집합투 운용 자기구 규모	공 98 98		운용사		년수	
			사기구 수(개)	#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_	_	_	-	-	_	_	_	-	-

<이력>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 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1 4-117		

책임운용전문인력	민상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_	_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4.10.31 기준]

	생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간접형)</mark>				운용경력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용역	운용	용사	군용성력 년수
			사기구 수(개)	ㅠ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민상구	1988	책임	19	15,042	19.76	11.02	20.47	11.37	4년 9개월

<이력>

- Fudan University International Finance

- 2015.07 ~ 2017.05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 2017.05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주식운용본부, 글로벌운용부문,

글로벌운용본부, GIS운용본부, 솔루션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생년		운용	현황	연평균	동종집합 수익률(%		·접형)	운용경력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운용 규모	운용	용 역	운용	용사	년수
			수(개)	ㅠ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_	_	_	_	_	_	_	_	_	_

<이력>

_

Ī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24.07.31 기준]									
		AH L =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2</mark>			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성명	생년 (년)	직위	집합투 운용 -		운용역		운용사		
				사기구 수	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Wyatt	1971	Head of Target	141	4,784.70	_				_
	Lee		Date Strategies		억 달러					

<이력>

- Washington University MBA, CFA

- 1997년 : Summit Strategies Group 리서치 애널리스트

- 1999년 : T. Rowe Price

	생년		운용	현황	연평균	동종집합 수익률(%	투자기구 5) <mark>(해외재</mark>	간접형)	운용경력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운용	운동	룡역	운용	용사	군용경역 년수
			사기구 수	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Kim DeDomin	1976	Portfolio Manager	203	5,031.14 억 달러	_	-	-	_	-
icis									

<이력>

- New York University MBA
- 1998년 ~ 2001년, 2003년 이후 : T. Rowe Price

	생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간접형)</mark>				운용경력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운용	운	용역	운용	용사	문등당학 년수
			사기구 수	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Andrew									
Jacobs	1978	Portfolio	141	5,101.26	_	_	_	_	_
van	1970	Manager	141	억 달러					
Merlen									

<이력>

- The University of Cambridge MBA, CFA
- 2000년 : T. Rowe Price

		생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재</mark>			간접형)	운용경력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운용	운용	용역	운용	용사	_ 년수
				사기구 수	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Tł	homas		Head of MA							
Po	oullaou	1976	Solutions, APAC	4	4.5천만	_	_	_	_	_
	ec		&Portfolio		달러					
			Manager							

<이력>

- University of Western Brittany
- 2017년 이전 :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2017 : T. Rowe Price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사항 중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등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이태경	2019년 9월 5일 ~ 2021년 9월 1일			
조성민	2021년 9월 2일 ~ 2022년 8월 8일			
민상구	2022년 8월 9일 ~ 현재			

(주 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주 1) 최근 3년간의 부칙	(주 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책임운용전문인력					
이태경	2019년 9월 5일 ~ 2021년 9월 1일				
조성민	2021년 9월 2일 ~ 2022년 8월 8일				
민상구	민상구 2022년 8월 9일 ~ 현재				
(주 1) 최근 3 년간의 책임	· (주 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 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용 (A-G)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 (A-G)	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 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
F)	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바용 (C-G)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ы 6 (0 u)	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C-P)	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 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다만, 사전지정운				
(C-R)	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제외한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				
(C-Re)	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디				
(O He)	폴트옵션) 적립금은 제외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하는 집합투				
기관 (C-RF)	자기구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판-랩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C-W)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라.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에 한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디폴트옵션 (O)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				
	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	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				
금 (S-P)	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				
= (S-P)	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	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와 계약을				
금 (S-R)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다만,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제외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판애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
수수료	ㅜㅜ표 선취(A)	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mark>2년</mark>
十十五	신위(A)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후취	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수수료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
	고 무구표 미징구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C)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0)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e)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6)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온라인으로 판매되</mark>
	포프 라인	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บ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
경로	지마	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
9 X	직판	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
		증권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
		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
		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F)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
	저비용	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
	(G)	
-1-1	디폴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사전지정운용
기타	옵션(O)	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
	연금(P)	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연금(R)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
	(W)	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	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대상	- <u>국내·외 집합투자증권</u> 에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투 자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u>국내·외 집합투자증권</u> 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한국투자 TDF 알 아서2050 증권 모 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은퇴시기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목표 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신탁재산내에서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자산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2050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설정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투자기간 동안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목표시점(Target Date) 이후부터 는 40%이하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u>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u>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u>국내·외 집합투자증권</u>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이상	- 신탁계약서 제3조 제4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 증권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 합-재간접형)
유동성자산	10%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	ll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u>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u>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u>제18조 제3호, 제19조 제2호</u> <u>내지 제4호</u>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u>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u>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 외 목적	
장외 파생상품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 외 목적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시선증구네비)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
집합투자증권	50%이상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
주식	_	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
T ~~	_	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
		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이하로 하고, 투자목표시점인 205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		
채권	50%미만	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	50%미만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시인ㅠ6와6년	30%01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		
어음	50%미만	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		
OIB	3070012	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판매포인구매포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히	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M.0.0.0	10%이하	크네 ' 저 짜증증은 [이네 윤포]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만, 법 제2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u>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u>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제4호 및 제5호</u>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u>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u>제18조 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u>제19조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u>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탁계약서 <u>제19조 제3호 가목 또는 나목</u>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 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채권 ·통화 관련	주식·채권·통화나 주식 ·채권·통화의 가격, 이 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	헤지 및 헤지외목적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장외 파생상품	주식·채권 ·통화 관련	주식·채권·통화나 주식 ·채권·통화의 가격, 이 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 (주 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투자제한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	
	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최초설정일
투자제한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터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1 개월간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	
	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가. 신탁계약서 제 17조 제 2항 제 1호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 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 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 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 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 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 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	
	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최초설정일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	부터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	1 개월간
	 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조 제 10 항에	
	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	
	은 조선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	
	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	
	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	
	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31-1-1 BAIN BAIN BAIN A WIT OUT ONE NEED T	

	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투자제한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최초설정일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부터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 개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	
	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합니다.

(2)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목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국내·외 집합투자 증권에 분산투자되며 그 비중이 투자기간 동안 동적으로 조정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공식 지수가 없으며,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은퇴시기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신탁재산내에서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자산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용하는 투자 신탁으로서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합니다.

(2) 상세 투자전략

■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T. Rowe Price International Ltd."사는 금융시장 환경 및 거시경제 전망, 투자성향 등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기별 투자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며, 주기적인 전술적 자산배분위원회를 통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자산배분 프로그램(Glide Path)에 따른 분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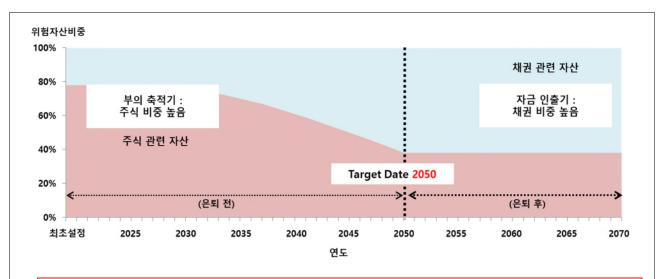
- 한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사회보장제도, 임금 및 연금 구조, 한국인의 기대수명, 생애주기 등을 반영한 최적화된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외 집합투자 증권에 분산투자 합니다.

■ 생애주기 동적자산배분(위험-안전자산 비중 탄력적 조절)

- 투자자의 은퇴시기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부의 축적에 초점을 두고,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채권에 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 목표시점(Target date) : 2050년

- 이 투자신탁은 2050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설정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투자기간 동안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목표시점(Target Date) 이후부터는 40%이하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자산배분은 최초설정 기준 하나의 예시 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 되는 동안 운용상황 등에 따라 상기 자산배분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환위험 관리전략 : 환위험 노출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 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혜지 전략에 따라 환위 험관리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되며 그 비중이 투자기간 동안 동적으로 조정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기 어 렵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공식 지수가 없으며,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 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 다.
-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
위험	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
	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재간접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
투자 위험	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
	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
	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
	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
	니다.
국내・외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
집합투자증권	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가격변동 위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
위험	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
	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관련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
위험	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

	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
	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
	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
	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자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변동위험	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
	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
	락으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하락 위험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
위험	 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
	 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
	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투자위험	····································
	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
	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
	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
	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및 RP매입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위험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
	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및 예금잔액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
위험	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
	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
	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
	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
	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
위험	방의 시스템적인 오류 및 오퍼레이션 오류로 인해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 타이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운용을 저해하여 투자신탁 이익의 최대화
	또는 손실의 최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위험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
	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글로벌투자	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넒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
	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
	 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 및 기준가격의 급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혜
투자 위험	 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전략에 따라 미달러(USD)이외
	에도 매우 다양한 글로벌 통화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특정 통화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
	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가위험	투자신탁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외국 세
외국 세법에	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의한 과세위험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장내거래에 비해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거래 위험	또한, 거래소 정산 이행 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를 체결하는 회사는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비유동적이므로 포지션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 또는 청산을 원활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외파생상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계
품 거래상대	약은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외국 집합투자증권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
방 위험	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는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부도처리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회사의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래상대방 회사의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도자산등의	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평가 위험	에 구자선력이 모뉴인 자선 중, 해당 자선 필앙자의 구모, 와의선정, 외자정니필자 기기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
871 716	기계 현장 또는 퍼런들지 현장 중으로 현해 현대님의 현무 또는 물꾸의 회꾸가 든된 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
	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권 매도 및 운	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

용에 대한 위	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
혐	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유동화증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투자 위험	자산 중 일부를 조합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실제 수익률
	이 목표 만기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기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부동산 PF, 대출채권, 파생상품, CDS계약 등 그 종류가 다
초자산의 고유	양하고 고위험자산인 경우도 있으나 신용평가사 부여등급은 짧은 만기 및 신용보강
위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조화를 통해 높은 등급의 증권으로 발행되나, 실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초자산은
	부여등급보다 고위험자산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집합투자기구	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변경 위험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한국투자 글로벌자
	산배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
	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
	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환율제도에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되고, 일부 국가의
따른 위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등의 환율에 연동되어 그 가치가 변동됩니다. 이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국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
	(원/달러 선물 등)을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위험 헤지를 실행

	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외환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연동통화 대비 평가절하 시키는 경우 등의 이	
	유로 환혜지의 유효성은 약화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원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	
변동위험	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	
	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 ' ' ' ' ' ' ' ' ' ' ' ' ' ' ' ' '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 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	
	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	
	오 취매로 참가바기나 즐거바요 파메취비 자하트피어지 사타어지도에 웹사도으로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	
	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716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	
	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	
레지이팅	지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	
71-1-5-71		
집합투자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	
기구 규모	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	

위험	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위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
	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
	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
위험	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
	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
위험	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위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
	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
	다.
기준가격 산정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오류 위험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W = T 0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ㅠ세 등 세포 적위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
	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
	드매니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져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져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져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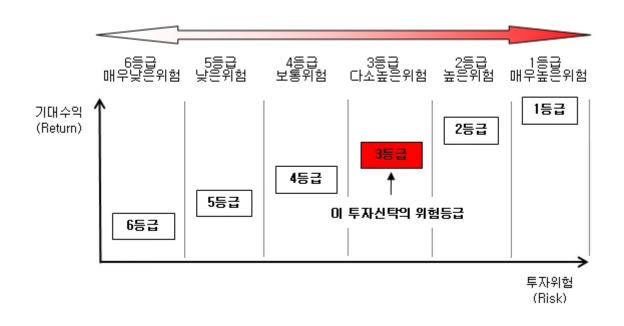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u>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u> 변동성이 27.60%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외 자산의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 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2022 11 24	.24 2등급	3등급	산정기준 변경
2022.11.24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0%초과 15%이하
	3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표준편차 → VaR
2024.11.28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
			의 최대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변
			동성 30%이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u> </u>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다만, 상기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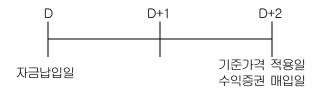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0.7% 이내	92 0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요 마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œ 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	없음

	010	0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	요 요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기관 (C-RF)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판-랩 (C-W)	아 조 작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 (O)	없음	92 미
	0.0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없음	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없음	없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R)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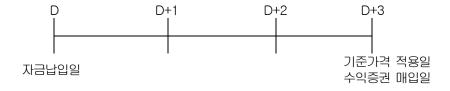
-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 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u>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 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신탁계약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 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합니다.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조근황에 납기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0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5영업일(D+4)</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10영업일(D+9)</u>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6영업일(D+5)</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1영업일(D+10)**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u>환매를 청구한 날</u>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8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9영업일 전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 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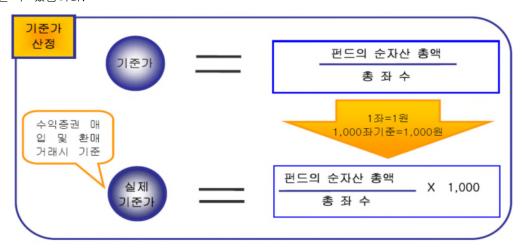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산정방법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
	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ᄮᅑᅐᄀ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산정주기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고ㆍ게시하지 아
	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77 11 75 1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
공시장소	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
-	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 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
	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
	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
	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
	가해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
상장주식	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
	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 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취득가격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운용담당 총괄본부장, 마케팅담당 총괄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위험관리담당부서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
	ਰੇ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
	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없음
	1.0% 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없음	없음
	0.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없음	없음
יייי דבייי דביייי דביייייי איייייייייייי	0.7% 이내	₩□	ᆹᆷ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	없음	없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	없음	없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없음	없음	젒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없음	없음	없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음	없	요 음 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없음	없음	, 전 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기관 (C-RF)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판-랩 (C-W)	아 장	없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 (O)	요 조	없음	없음
(6)		3년 미만 환매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없음	환매금액의	없음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R)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 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한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비율 (연간, %)								
구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총 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0.2810	0.6400	0.0300	0.0100	0.9610	0.0016	0.9626	0.9100	1.3962	0.0016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0.2810	0.3200	0.0300	0.0100	0.6410	0.0019	0.6429	0.6100	1.0766	0.0018
수수료선취- 오프라인-무	0.2810	0.4480	0.0300	0.0100	0.7690	0.0016	0.7706	_	1.2042	0.0016

권유저비용										
(A-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2810	0.9800	0.0300	0.0100	1.3010	0.0021	1.3031	1.2200	1.7377	0.0119
(C)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	0.2810	0.4900	0.0300	0.0100	0.8110	0.0011	0.8121	0.8000	1.2457	0.0019
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	0.2810	0.0300	0.0300	0.0100	0.3510	0.0016	0.3526	_	0.7862	0.0016
관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	0.2810	0.6860	0.0300	0.0100	1.0070	0.0016	1.0086		1.4422	0.0016
권유저비용	0.2010	0.0000	0.0000	0.0100	1.0070	0.0010	1.0000		1.4466	0.0010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	0.2810	0.9200	0.0300	0.0100	1.2410	0.0017	1.2427	_	1.6763	0.0016
인연금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0.2810	0.4600	0.0300	0.0100	0.7810	0.0019	0.7829	_	1.2164	0.0018
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2810	0.7200	0.0300	0.0100	1.0410	0.0019	1.0429	_	1.4765	0.0015
직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0.2810	0.3600	0.0300	0.0100	0.6810	0.0019	0.6829	_	1.1165	0.0021
연금 (C-R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2810	0.0100	0.0300	0.0100	0.3310	0.0016	0.3326	_	0.7662	0.0016
직연금,기관										
(C-R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직	0.2810	0.0000	0.0300	0.0100	0.3210	0.0016	0.3226	_	0.7562	0.0016
판-랩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2810	0.1800	0.0300	0.0100	0.5010	0.0023	0.5033	_	0.9369	0.0020
직연금,디폴트										
옵션 (O)	0.001.5	0.0701	0.000	0.0101	0.53.4	0.0015	0.5305		4 0000	0.00:5
수수료후취-	0.2810	0.2500	0.0300	0.0100	0.5710	0.0016	0.5726		1.0062	0.0016

온라인슈퍼										
(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2810	0.2000	0.0300	0.0100	0.5210	0.0016	0.5226	_	0.9562	0.0016
개인연금 (S-	0.2010	0.2000	0.0300	0.0100	0.5210	0.0016	0.5226	_	0.9562	0.0016
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2810	0.1900	0.0300	0.0100	0.5110	0.0015	0.5125		0.0461	0.0018
퇴직연금 (S-	0.2010	0.1900	0.0300	0.0100	0.5110	0.0015	0.5125	_	0.9461	0.0016
R)										
= 기니기	ㅂ귀 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_	_	사유발
부과시기		매3개월 후급					•	•	_	생시

[2035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부과비율 (연간, %)									
구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총 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0.2380	0.4200	0.0300	0.0100	0.6980	-	0.6980	1.0200	1.1280	1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0.2380	0.2100	0.0300	0.0100	0.4880	_	0.4880	0.6500	0.9180	_	
수수료선취- 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A-G)	0.2380	0.2940	0.0300	0.0100	0.5720	I	0.5720	-	1.0020	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0.2380	0.7600	0.0300	0.0100	1.0380	-	1.0380	1.4000	1.4680	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 e)	0.2380	0.3800	0.0300	0.0100	0.6580	_	0.6580	0.9000	1.0880	_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 관 (C-F)	0.2380	0.0300	0.0300	0.0100	0.3080	_	0.3080	_	0.738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	0.2380	0.5320	0.0300	0.0100	0.8100	-	0.8100	_	1.2400	-	

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	0.2380	0.6800	0.0300	0.0100	0.9580	-	0.9580	-	1.3880	-
인연금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0.2380	0.3400	0.0300	0.0100	0.6180	-	0.6180	_	1.0480	-
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2380	0.5300	0.0300	0.0100	0.8080	-	0.8080	-	1.2380	_
직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0.2380	0.2650	0.0300	0.0100	0.5430	_	0.5430	_	0.9730	_
연금 (C-R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2380	0.0100	0.0300	0.0100	0.2880	_	0.2880	_	0.7180	_
직연금,기관	0.2000	0.0100	0.0000	0.0100	0.2000		0.2000		0.7100	
(C-R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직	0.2380	0.0000	0.0300	0.0100	0.2780	-	0.2780	-	0.7080	-
판-랩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2380	0.1560	0.0300	0.0100	0.4340	_	0.4340	_	0.8640	_
직연금,디폴트										
옵션 (O)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2380	0.1600	0.0300	0.0100	0.4380	-	0.4380	-	0.8680	-
(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2380	0.1500	0.0300	0.0100	0.4280	_	0.4280	_	0.8580	_
개인연금 (S-										
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2380	0.1400	0.0300	0.0100	0.4180	_	0.4180	_	0.8480	_
퇴직연금 (S-										
R)										
부과시기			설정일로			사유발	_	_	-	사유발
		OH	3개월 후	급		생시				생시

[2040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일무터 투사신탁 해시일까시]									
		부과비율 (연간, %)								
구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총 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0.1960	0.2000	0.0300	0.0100	0.4360	-	0.4360	1.0200	0.8660	1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0.1960	0.1000	0.0300	0.0100	0.3360	ı	0.3360	0.6500	0.7660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A-G)	0.1960	0.1400	0.0300	0.0100	0.3760	ı	0.3760	-	0.8060	ı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0.1960	0.5400	0.0300	0.0100	0.7760	_	0.7760	1.4000	1.2060	_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 e)	0.1960	0.2700	0.0300	0.0100	0.5060	_	0.5060	0.9000	0.9360	_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 관 (C-F)	0.1960	0.0300	0.0300	0.0100	0.2660	-	0.2660	_	0.696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C-G)	0.1960	0.3780	0.0300	0.0100	0.6140	-	0.6140	-	1.0440	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 인연금 (C-P)	0.1960	0.4900	0.0300	0.0100	0.7260	_	0.7260	_	1.1560	_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 (C-Pe)	0.1960	0.2450	0.0300	0.0100	0.4810	-	0.4810	_	0.9110	_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 (C-R)	0.1960	0.3900	0.0300	0.0100	0.6260	_	0.6260	_	1.0560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0.1960	0.1950	0.0300	0.0100	0.4310	_	0.4310	_	0.8610	_

연금 (C-R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1960	0.0100	0.0300	0.0100	0.2460		0.0400		0.6760	
직연금,기관	0.1960	0.0100	0.0300	0.0100	0.2460	_	0.2460	_	0.6760	_
(C-R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직	0.1960	0.0000	0.0300	0.0100	0.2360	_	0.2360	_	0.6660	_
판-랩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0.1960	0.1370	0.0300	0.0100	0.3730	_	0.3730	_	0.8030	_
직연금,디폴트	0.1900	0.1370	0.0300	0.0100	0.3730		0.3730		0.0030	
옵션 (O)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1960	0.0900	0.0300	0.0100	0.3260	_	0.3260	_	0.7560	_
(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1960	0.0800	0.0300	0.0100	0.3160	_	0.3160	_	0.7460	_
개인연금 (S-	0.1300	0.0000	0.0000	0.0100	0.0100		0.0100		0.7400	
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1960	0.0700	0.0300	0.0100	0.3060	_	0.3060	_	0.7360	_
퇴직연금 (S-	0.1900	0.0700	0.0000	0.0100	0.5000		0.0000		0.7000	
R)										
브래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사유발	_	_	_	사유발
<u>구</u> 퍼지기	부과시기 매3개월 후급					생시				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9.05 ~ 2024.09.04]
 -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직전 회계연도 기타비용 금액 : 868,540 원]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A]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9.05 ~ 2024.09.04]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 금액 : 937,483 원]
- (주 3)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43%]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7)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u> </u>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	
판매회사보수	_	키주 선전이 크린다
신탁업자보수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메이게걸 우리
총보수	-	
기타 비용	0.0037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037	
(동종유형총보수·비용)	-	-
합성 총보수·비용	0.0027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0037	
증권 거래비용	0.0016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

- 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9.05 ~ 2024.09.04]
-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직전 회계연도 기타비용 금액 : 3,240,560 원]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9.05 ~ 2024.09.04]
 -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 금액 : 1.429.882]
- (주3)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T &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8	298	403	625	1,263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로프다인 (A)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2	387	537	855	1,753	
(A)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184	255	406	846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논다인 (A-e)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0	273	391	641	1,356	
(A-e)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230	314	494	1,015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무권유저비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3	319	450	727	1,517	
용 (A-G)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4	272	416	719	1,579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8	362	552	950	2,063	

인 (C)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_ (0)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	170	260	452	1,007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
구-온라인		128	260	397	688	1,513
(C-e)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0	200	337		1,010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6	74	114	198	447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 · · · · · · · · · · · · · · · · ·	
인-기관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1	165	252	438	976
(C-F)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211	323	560	1,239
구-오프라						
인-무권유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저비용 (C-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8	301	459	793	1,736
G)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259	397	686	1,510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인-개인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2	349	533	917	1,995
금 (C-P)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4	251	436	972
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개인연금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5	254	388	672	1,480
(C-Pe)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18	333	578	1,279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인-퇴직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1	308	470	811	1,774
금 (C-R)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	143	219	381	852
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퇴직연금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4	233	357	618	1,365
(C-Re)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70	107	187	422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인-퇴직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9	160	246	427	952
금,기관	(고두자입합투자기구 중도구·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5	100	270	741	332
(C-RF)	\\\\\\\\\\\\\\\\\\\\\\\\\\\\\\\\\\\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	68	104	182	410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158	242	422	940
인,직판-랩	2	· -			. – <u>-</u>	

			1		1	
(C-W)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2	105	162	282	633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인-퇴직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6	196	300	521	1.155
금,디폴트옵	,	90	190	300	321	1,133
션 (O)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후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9	120	184	321	7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온라인슈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3	210	322	558	1,236
퍼 (S)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4	110	168	293	657
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슈퍼-개인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200	306	531	1,178
연금 (S-P)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3	107	165	287	645
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슈퍼-퇴직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7	198	303	526	1,166
연금 (S-R)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종류 A 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와 종류 C-e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 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ㆍ비용을 연간 [0.43%]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4) [종류 A], [종류 A-e], [종류 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1.0%], [납입금액의 0.5%], [납입금액의 0.7%]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5) [종류 S] 수익증권은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주 6) 상기 도표는 최초설정일에 적용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의 투자기간별 예시입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u>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u>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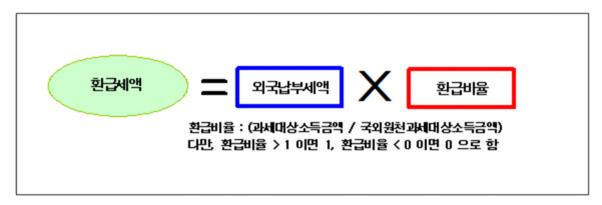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9년 8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 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 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 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110103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납입요건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납입 가능
A202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수령요건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3.2%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세액공제	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u>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u>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
분리과세 한도	<u>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외)</u>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부득이한 연금외	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수령 사유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
	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수령시 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C-R, 종류C-Re, 종류C-RF, 종류O, 종류S-R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원과 합산)의 13.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 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 (2023.09.05 ~ 2024.09.04)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4기 (2022.09.05 ~ 2023.09.0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3기 (2021.09.05 ~ 2022.09.0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TH	무상태표	[Eme]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8 7	2024.09.04	2023.09.04	2022.09.04
운용자산	74,747,811,166	25,737,919,551	21,285,168,773
증권	74,268,196,628	25,299,637,038	20,868,974,15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79,614,538	438,282,513	416,194,61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12,068,254	123,281,302	86,363,551
자산총계	75,259,879,420	25,861,200,853	21,371,532,32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15,093,687	95,914,707	62,485,180
부채총계	415,093,687	95,914,707	62,485,180
원본	47,642,557,326	19,238,138,283	16,862,569,029
수익조정금	6,796,045,691	-19,349,773	329,349,807
이익잉여금	20,406,182,716	6,546,497,636	4,117,128,308
자본총계	74,844,785,733	25,765,286,146	21,309,047,144

[단위:원,%]

	손익계산서									
- C	제 5기	제 4기	제 3기							
항 목	(2023.09.05 ~ 2024.09.04)	(2022.09.05 ~ 2023.09.04)	(2021.09.05 ~ 2022.09.04)							
운용수익	6,932,181,539	1,821,902,167	-996,962,250							
이자수익	26,319,949	11,685,182	3,485,73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6,905,861,590	1,810,216,985	-1,000,447,98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18,305,486	178,410,871	145,028,508							
관련회사 보수	318,209,087	178,378,804	145,014,865							
매매수수료	96,399	32,067	13,643							
기타비용	5,364,098	3,302,971	3,430,933							
당기순이익	6,608,511,955	1,640,188,325	-1,145,421,69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합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5 기 0 원, 4 기 0 원, 3 기 0 원 발생)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5 기 0 원, 4 기 0 원, 3 기 0 원 발생)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백만원,%]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당기 보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의 평균가액(B)	(A/B)	매매회전율
0	0	0	0	0	0.00	32.08

- (주 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당기		전기			
구 분	거래	거래	비용	거래	거래비용		
T E	기대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기대 금액(A)	J 011/D)	거래비용	
	□ ï (£)	□ ' 1(0)	비율(B/A)	□ ï (£)	금액(B)	비율(B/A)	
주식	-	-	-	-	-	-	
주식 이외의	GE 204	1	0.00	43,608	6	0.01	
증권(채권 등)	65,324	ı	0.00	43,606	0	0.01	
장내파생상품	1	-	-	-	-	_	
장외파생상품	-	1	_	-	-	_	
합 계	65,324	1	0.00	43,608	6	0.01	

-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 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5기 (20				제3기 (20)	
	금	액	급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9,614,538	0 0 479,614,538	438,282,513	0 0 438,282,513	416,194,619	0 0 416,194,619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0 0 652,190,000	652,190,000	0 0 31,580,000	31,580,000	0 0 404,370,000	404,37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0 0 0	73,616,006,628	0 0 0	25,268,057,038	0 0 0	20,464,604,154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0 0 73,616,006,628 0	. 5,6 16,655,625	0 0 25,268,057,038 0	25,255,557,555	0 0 20,464,604,154 0	25, 16 1,65 1,16 1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0	0	0	0	0	0
1. 건돌 2. 토지 3. 농작물 4. 촉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0	0	0	0
기다운용사선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297,359,740	512,068,254	0 0 50,126,592	123,281,302	0 0 20,394,316	86,363,551
1. 배도파가당전미구급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291,335,740 0 241,891 214,466,623 0 0		70,640 73,084,070 0 0		20,394,316 0 187,719 65,781,516 0 0	
자 산 총 계 부 채		75,259,879,420 0		25,861,200,853 0		21,371,532,324
운용부채 1. 파생상품 2. 환매조권부채권매도 3. 기타 운용부채	0 0 0	o O	0 0 0	Ö	0 0 0	0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0 0 294,415,584 120,678,103	415,093,687	0 0 49,630,289 46,284,418	95,914,707	0 0 20,192,392 42,292,788	62,485,18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0	415,093,687	0	95,914,707	0	62,485,180
자 본 1. 원본 2. 이월잉여금 (발행좌수 당 47.040 FF7.000 TJ	47,642,557,326 27,202,228,407	0	19,238,138,283 6,527,147,863	0	16,862,569,029 4,446,478,115	0
기: 47,642,557,326 좌 기: 19,238,138,283 좌 전전기: 16,862,569,029 ^좌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20,406,182,716 6,796,045,691		6,546,497,636 -19,349,773		4,117,128,308 329,349,807
(기준가격 당 기: 전기: 1,651.68 원 전기: 1,388.92 원						
전전기: 1,293.39 ^원)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844,785,733 75,259,879,420		25,765,286,146 25,861,200,853		21,309,047,144 21,371,532,324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5기 (2023.09.0	5 ~ 2024.09.04)	제4기 (2022.09.0	05 ~ 2023.09.04)	제3기 (2021.09.0	05 ~ 2022.09.04)
м ¬	己	액	一	랙	巾	액
운 용 수 익		6,932,181,539		1,821,902,167		-996,962,250
1. 투자수익		26,319,949		11,685,182		3,485,735
1. 이 자 수 익	26,319,949		11,685,182		3,485,735	
2. 배당금 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961,725,994		1,936,900,059		149,269,76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6,961,725,994		1,936,900,059		149,269,769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5,864,404		126,683,074		1,149,717,754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55,864,404		126,683,074		1,149,717,754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323,669,584		181,713,842		148,459,441
1. 운용수수료	126,519,607		65,230,326		56,831,383	
2. 판매수수료	178,183,092		106,185,597		82,989,677	
3. 수탁수수료	13,506,388		6,962,881		5,193,805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96,399		32,067		13,643	
6. 기 타 비 용	5,364,098		3,302,971		3,430,933	
당기순(손실)이익		6,608,511,955		1,640,188,325		-1,145,421,691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139		85		-68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모)

[단위:억좌,억원]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ון או			설정(발행)		환매		기단을 연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2023.09.05 ~	105	0.5.7	070	FOC	104	100	450	750	
2024.09.04	185	257	372	586	104	163	452	750	
2022.09.05 ~	165	213	73	96	52	69	185	258	
2023.09.04	165	213	73	90	52	09	100	250	
2021.09.05 ~	77	106	113	152	26	2.4	165	214	
2022.09.04	7.7	106	113	152	20	34	100	21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2)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A)

[단위:억좌,억원]

	7171-	· 자그		회계기	l간 중		חורום	· *! ¬
71 71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급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2023.09.05 ~	2	3	0	0	1	1	2	3
2024.09.04	۷	5	0	0	-	-	2	5
2022.09.05 ~	2	ω	0	0	0	0	2	3
2023.09.04	۷	5	0	0	0	0	۷	5
2021.09.05 ~	1	2	1	2	0	0	2	0
2022.09.04	l	2	I	2	0	0	2	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A-e)

[단위:억좌,억원]

	コリフトラ	- 자그		회계기		סוכור	·자그	
기 간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건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2023.09.05 ~	4	4	G	7	3	4	7	8
2024.09.04	4	4	6	7	3	4	/	0
2022.09.05 ~	4	4	1	1	1	1	4	4
2023.09.04	4	4		ı	ı	'	4	4
2021.09.05 ~	1	2	4	4	1	1	4	1
2022.09.04		2	4	4	I	ı	4	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4)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C)

	7171-	- - - - -	회계기간 중				חוכום	. X. ¬
기 간	기간조	5 QT	설정(발행)		환	OH	기간들	<u>:</u>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9.05 ~	1	1	0	0	1	1	0	0
2024.09.04	'	'	0	0	-	-	O	U
2022.09.05 ~	5	5	0	0	5	4	1	1
2023.09.04	5	5	0	0	5	4	1	I
2021.09.05 ~	0	0	5	5	0	0	5	5

	1	1	ı	ı		1
2022.09.0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5)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C-P)

[단위:억좌,억원]

	7171-	· 자그	회계기간 중				חוכור	. T
기 간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진	좌수 (출자 지분수)	라 (1)	좌수 (출자 지분수)	래	좌수 (출자 지분수)	래	좌수 (출자 지분수)	급
2023.09.05 ~	10	13	1	1	1	1	10	16
2024.09.04	10	2	ı	ı	ı	ı	10	10
2022.09.05 ~	11	13	1	2	2	3	10	13
2023.09.04	1 1	2	-	۷	۷	5	10	10
2021.09.05 ~	7	10	5	7	2	2	11	13
2022.09.04	7	10	5	,	۷	۷	11	1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5)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C-Pe)

[단위:억좌,억원]

	7171-	- TI	회계기간 중				21210	
기 간	기간소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OH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9.05 ~	24	32	16	26	5	7	35	57
2024.09.04	24	32	10	20	5	7	33	57
2022.09.05 ~	22	28	5	6	3	4	24	32
2023.09.04	22	20	ວ	D	3	4	24	32
2021.09.05 ~	9	12	15	20	2	3	22	28
2022.09.04	9	12	15	20	2	3	22	2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6)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C-Re)

기 간	7171-	- XLD	회계기간 중				חוכור	· 자그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9.05 ~	110	150	204	461	78	101	226	F22
2024.09.04	110	152	294	461	70	121	326	533
2022.09.05 ~	96	124	48	63	35	45	110	152
2023.09.04	90	124	40	03	33	43	110	132
2021.09.05 ~	41	57	74	98	18	24	96	124
2022.09.04	41	57	74	90	10	24	90	12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7)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C-e)

[단위:억좌,억원]

	7171-	· 자그	회계기간 중				חוסום	· *! ¬
기 간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2023.09.05 ~	1	1	1	1	0	0	2	2
2024.09.04	1	ı	ı		0	0	۷	۷
2022.09.05 ~	1	1	0	0	0	0	1	1
2023.09.04	-	1	0	0	0	0	-	-
2021.09.05 ~	0	0	1	1	0	0	1	1
2022.09.04	0	0	I	I	0	0	I	_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8)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C-F)

[단위:억좌,억원]

	7171-	- *!		회계기		חובות	· *! ¬		
אר דו	기간소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9.05 ~	0	0	0	0	0	0	0	0	
2024.09.04	0	0	0	0	0	0	U	0	
2022.09.05 ~	1	1	0	0	1	1	0	0	
2023.09.04	ı	1	0	U	-	-	O	U	
2021.09.05 ~	1	1	0	0	0	0	1	1	
2022.09.04		'	0		0	0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9)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O)

	コロ・ネ	조 잔고	회계기간 중				סוכור	ᅡ자고
71 71	기진조	: QT	설정(발행)	환	OH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금액 지분수)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급	좌수 (출자 지분수)	급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출자	금액
2023.09.05 ~ 2024.09.04	15	16	67	79	12	15	70	89
2022.09.05 ~ 2023.09.04	0	0	16	17	1	1	15	16
_	-	_	_	_	_	_	_	_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10)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C-R)

[단위:억좌,억원]

	7171-	를 잔고	회계기간 중				חוכור	
71 71	기진조	는 선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
2023.09.05 ~	24	32	3	4	E	8	22	35
2024.09.04	24	32	3	4	5	0	22	33
2022.09.05 ~	25	32	4	5	5	6	24	32
2023.09.04	25	32	4	5	5	6	24	32
2021.09.05 ~	15	21	10	14	1	1	25	32
2022.09.04	15	21	10	14			25	3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11) 한국투자TDF알아서205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S-R)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신될 산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급액
2023.09.05 ~	2	3	3	5	2	3	4	5
2024.09.04								
2022.09.05 ~	2	2	2	2	1	1	2	3
2023.09.04								
2021.09.05 ~	1	2	1	1	1	1	2	2
2022.09.0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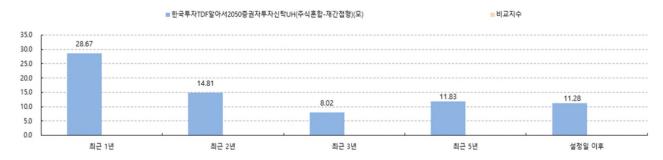
[단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기 간	2023.11.01~	2022.11.01~	2021.11.01~	2019.11.01~	2019.09.05~
. –	2024.10.31	2024.10.31	2024.10.31	2024.10.31	2024.10.31
투자신탁(전체)	28.67	14.81	8.02	11.83	11.28
비교지수	_	_	_	_	_
수익률 변동성	8.62	9.41	11.53	13.15	13.0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27.48	13.73	6.98	-	11.01
비교지수	<u> </u>	<u> </u>	_	<u> </u>	_
수수료선취-온라인 (A- e)	27.87	14.08	7.32	-	8.25
비교지수	<u> </u>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7.66	13.89	7.14	-	8.30
비교지수	<u> </u>	<u> </u>	_	<u> </u>	_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C-P)	27.13	13.41	6.68	10.44	10.36
비교지수	<u> </u>	<u> </u>	_	_	_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C-Pe)	27.70	13.93	7.17	10.98	10.89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C-R)	27.38	13.63	6.89	10.67	10.50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C-Re)	27.82	14.04	7.27	11.04	10.97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28.03	14.23	7.46		10.10	
퍼-퇴직연금 (S-R)	20.03	14.23	7.40	_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디폴트옵션	28.05	_	_	_	15.36	
(O)						
비교지수	_	_	_	_	_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 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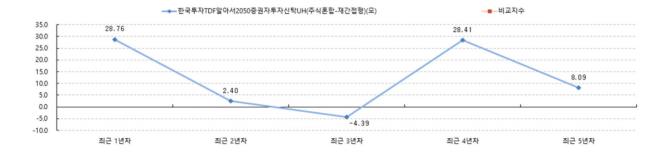
[단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 간	2023.11.01~	2022.11.01~	2021.11.01~	2020.11.01~	2019.11.01~	
	2024.10.31	2023.10.31	2022.10.31	2021.10.31	2020.10.31	
투자신탁(전체)	28.76	2.40	-4.39	28.41	8.09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징구-오프라인	27.56	1 40	F 26	07.14	6.88	
(A)	27.50	1.42	-5.36	27.14	0.00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선취-온라인 (A-	27.96	1.75	-5.05	13.24	_	
е)	21.90	1.73	5.05	10.24	_	

비교지수	_	_	<u> </u>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7.75	1.58	-5.21	13.68	_	
(C-e)	21.13	1.30	J.Z1	10.00	_	
비교지수	_	_	_	_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7.22	1.14	-5.63	26.80	6.75	
-개인연금 (C-P)	21,22	1.17	3.00	20.00	0.73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7.79	1.61	-5.18	27.36	7.45	
개인연금 (C-Pe)	21.13	1.01	J.10	27.50	7.43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7.46	1.34	-5.43	27.04	7.03	
-퇴직연금 (C-R)	27,40	1.04	0.10		7.00	
비교지수	-	-	-	_	_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7.91	1.71	-5.09	27.49	7.32	
퇴직연금 (C-Re)	27.51	1.7	3.00	27.43	7.02	
비교지수	-	-	_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28.12	1.88	-4.92	27.70	-0.36	
퍼-퇴직연금 (S-R)	20.12	1.00	1.02	27.70	0.00	
비교지수	_	_	_	_	_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디폴트옵션	28.13	2.72	_	-	_	
(0)						
비교지수	_	_	-	-	-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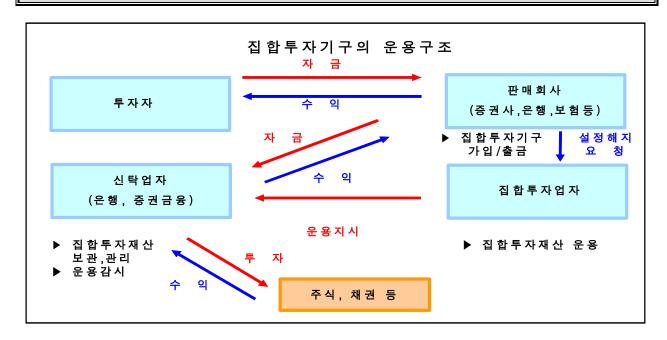
[2024.09.30 현재 / 단위:억원,%]

통화		ā	증권		파생	상품		특별	자산	단기		
^{6외} 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 산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OW	0	0	0	9	0	0	0	0	0	34	2	45
KRW	(0.00)	(0.00)	(0.00)	(20.79)	(0.00)	(0.00)	(0.00)	(0.00)	(0.00)	(75.42)	(3.79)	(100.00)
USD	0	0	0	704	0	0	0	0	0	1	0	704
030	(0.00)	(0.00)	(0.00)	(99.91)	(0.00)	(0.00)	(0.00)	(0.00)	(0.00)	(0.09)	(0.00)	(100.00)
합계	0	0	0	713	0	0	0	0	0	35	2	750
답게	(0.00)	(0.00)	(0.00)	(95.14)	(0.00)	(0.00)	(0.00)	(0.00)	(0.00)	(4.63)	(0.23)	(100.00)

-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 5)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구소 및 선탁지	(연락처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회사 연혁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정사 전국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30 : 한국투자증권 편입
	- 2022.07.29 : 물적분할을 통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설립
자본금	660.5억원
주요주주 현황	한국투자증권(100%)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2) 의무

-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2.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24기 (2023.12.31)	제23기 (2022.12.31.)	계정과목	제24기 (2023.1.1.~ 2023.12.31.)	제23기 (2022.1.1.~ 2022.12.31.)	
현금및예치금	44,193	110,805	영업수익	110,985	137,094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8,542	10,277	영업비용	80,500	86,816	
기타포괄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지산	2,020	2,152	영업이익	30,485	50,278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91,631	104,005	영업외수익	12,138	5,573	
대출채권및수취채권	955	945	영업외비용	386	14,024	
유형자산	4,176	5,549	법인세차감전	42,237	41,827	
기타자산	88,381	33,544	법인세비용	9,775	10,740	

자산총계	279,898	267,277	당기순이익	32,462	31,087
예수부채	37,580	50,403			
기타부채	26,748	33,530			
부채총계	64,328	83,933			
자본금	66,050	66,050			
자본잉여금	10,735	10,7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9	814			
이익잉여금	138,206	105,745			
자본총계	215,570	183,344			

라. 운용자산 규모

[2024.10.31 현재 / 단위:억]

집합		ŧ	증권집합투.	자기구			부동산	특별자	혼합자산	단기	
투자				투자			및부동	산및특	및혼합자	금융	총 계
기구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고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산파생	별자산	산파생	(MMF)	.
종류				게작성				파생		(IVIIVII)	
수탁고	110,667	153,002	15,382		65,933	22,894	66	4,764	37,563	43,949	454,22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u>외화자산의 운용·운용</u> 지시업무를 아래의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해 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1) 업무위탁의 범위 및 사유

구 분	내 용
업무위탁 대상투자신탁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업무위탁의 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회사 개요

회 사 명	T. Rowe Price International Ltd.
주소 및 연락처	60 Queen Victoria Street, London, EC4N 4TZ, U.K.
구소 및 선탁자	(연락처 : +44 20 7651 8200)
	- 1937년 T. Rowe Price 설립(지주회사)
회사연혁	- 2000년 T. Rowe Price International 설립
	- 2002년 Target Date Fund 운용 개시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u>외화자산의 운용·운용</u> 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를 아래의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해 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1) 업무위탁의 범위 및 사유

구 분	내 용
업무위탁 대상투자신탁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업무위탁의 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회사 개요

회 사 명	T. Rowe Price International Ltd.	
주소 및 연락처	60 Queen Victoria Street, London, EC4N 4TZ, U.K.	
	(연락처 : +44 20 7651 8200)	
	- 1937년 T. Rowe Price 설립(지주회사)	
회사연혁	- 2000년 T. Rowe Price International 설립	
	- 2002년 Target Date Fund 운용 개시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연락처: 1588-5000,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 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법 제8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1) 최초설정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연락처 : 02-2180-0400, www.shinhanaitas.com)

(2) 2020년 8월 3일부터

회 사 명	㈜KB 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연락처 : 02-2073-0595, www.kbfp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

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율곡로 75	구 국제금융로6길	구 국회대로 70길	마곡중앙2로 61
주소 및 연락처	(02-2251-1300,	38	19	(02-721-5300,
	www.koreaap.com)	(02-3215-1400,	(02-398-3900,	www.fnpricing.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u>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u> 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 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 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u>전자등록기관</u>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u>전자등록기관</u>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 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 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 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 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 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u>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 니다.
 -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 시하거나 집행한 자

-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 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u>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u>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u>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u> 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정리이행 계획, 정리실적을 업무보고서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 5%이하인 경우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 정 제7-8조 제3호의2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 는 사항
 - 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다음 각 호의</u>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집합투자업자가 <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u>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u>같은 조 제3항에</u>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 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 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8. 투자신탁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u> 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

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 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u>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 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기내의 승규	자연의 승규	기대급박
_	-	_	-	_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 내역입니다.
-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_	-	_	_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 내역입니다.
-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1. 기본원칙
관련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
	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1. 기본원칙
관련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 : 회수완료

구 분	내 용
투자주체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
구자극극	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1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
	-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투자금 회수계획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
구자급 외구계복	액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
	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

- (주 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다만, 당초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으나. 집합투자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년간 투자
 - ② 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 산하는 경우
 -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이전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 (주 2)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을 공유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을 통해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 ※ 다른 자투자신탁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의 집합투자업 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공유하는 모투자신탁 : 한국투자 TDF 알아서2050 증권 모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회수완료

구 분	내 용
투자주체	한국투자신탁운용
트지모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
투자목적 	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1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
	-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투자금 회수계획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
무자금 외누게복	액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
	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

- (주 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다만, 당초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으나, 집합투자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년간 투자
 - ② 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 산하는 경우
 -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투자 의무를 승계(이전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 (주 2)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